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300089
신청인: 엔에이치엔 주식회사(NHN CORPORATION)
피신청인: 김경주(KIM KYUNG JOO)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엔에이치엔 주식회사(NHN CORPOR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NHN 그린팩토리 16층

대리인 : 특허법인 수 담당변리사 서수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3 노바빌딩 2층

피신청인 : 김경주(KIM KYUNG JOO)

서울 강동구 길2동

이메일 dew3000@empal.com

분쟁 도메인이름은 "navercorp.net"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닷네임코리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2 삼익라비돌빌딩 3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3. 6. 1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6. 1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3. 6. 26.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3. 6.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3. 6. 26.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3. 7. 16.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 16.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2013. 7. 17.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 19. 센터는 최성준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3. 7. 19.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갑 제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3. 3. 11.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도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2, 4, 5, 6, 8, 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AVER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명칭으로 ‘항해하다’를 뜻하는 navigate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의 합성어로 ‘항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포털사이트(www.naver.com)는 1999. 6.에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통합검색 서비스는 물론이고, 사전, 지도, 동영상, 이미지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포털사이트인 NAVER의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검색, 디렉터리, 웹문서는 물론 이미지, 동영상, 리포트, 지도, 사전 검색, 지식iN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들에게는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스마트폰이 사용되면서 부터는 역시 NAVER라는 명칭의 모바일 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2012. 7. 무렵 NAVER는 우리나라의 PC 검색 시장에서 7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모바일 검색과 포털 앱 분야에서도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여{상세히 살펴보면 모바일 통합검색 쿼리(Query) 점유율은 73.9%,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중 포털 앱의 시간점유율(TTS)은 73.1%이다}, 국내 검색시장은 NAVER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실, 스마트폰 정보 포털인 ‘www.appstory.co.kr’가 2011. 6. 20.부터 7. 3.까지 스마트폰 이용자 3,34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검색 시 이용하는 포털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NAVER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4%(2,471명)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사실, 2013. 1. NAVER의 월간 페이지뷰와 월간 총 이용시간은 각각 57억 건과 7천만 시간으로 이는 각각 6개월간 3.6%, 13.9% 증가한 수치이고, NAVER는 포털 앱 이용시간에 있어서 2, 3위 업체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실, ‘PC 시대’를 호령해온 NAVER의 패권이 ‘모바일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사실, 검색광고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인 NAVER에게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2012년 1분기 NAVER의 검색광고 매출은 2,99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성장하였고, 2위인 다음의 검색광고 매출은 475억 원, 3위인 네

이트의 검색광고 매출은 157억 원으로, 2위와 3위 업체의 매출을 합쳐도 1위 NAVER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실, 신청인은 우리나라에서 2004. 1. 29. **NAVER**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인터넷에서의 광고대행업, 컴퓨터통신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았고, 2013. 1. 29. **NAVER**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가공편집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NAVER의 한글 발음인 **네이버**에 관하여 2004. 1. 29.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인터넷에서의 광고대행업, 컴퓨터통신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을, NAVER의 앞 또는 아래에 도형을 추가한 에 관하여 2004. 9. 7.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인터넷정보검색제공업, 전자데이터 및 서류 저장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등으로 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을 각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서비스표 및 웹사이트 명칭인 NAVER와 혼동을 야기할 만큼 유사하고,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므로, 규정 제4조 (a)항에 해당하느바,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신청인의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영업표지로 사용되고 있고 등록상표서비스표이기도 한 ‘NAVER’ 와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인 ‘navercorp’ 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의 ‘NAVER’ 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에게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영업표지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저명한 영업표지 및 등록상표서비스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corp’ 는 주식회사, 기업, 법인을 의미하는 ‘corporation’ 의 약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corporation’ 은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어떤 주식회사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

할 때 고유한 명칭 외의 주식회사 부분을 ‘corporation’의 약자인 ‘corp’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참고로 신청인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nhncorp.com이다). 따라서 일반인들 대부분은 위 ‘navercorp’을 저명한 표지인 ‘naver’와 주식회사 표시인 ‘corp’으로 분리하여 볼 것이다. 그런데 ‘corp’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위 ‘navercorp’에서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은 ‘naver’이고, 이러한 ‘naver’는 신청인의 저명한 영업표지 및 등록상표서비스표 ‘NAVER’와 알파벳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철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corp’가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보통명칭이므로 일반인들 대부분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고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 NAVER를 운영하는 회사의 웹사이트 주소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net’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통상 위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을 네트워크 제공자가 사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인의 저명한 영업표지이고 등록상표서비스표인 ‘NAVER’와 피신청인의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 ‘navercorp’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도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분쟁 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이 피신청인의 성명, 별칭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정되는 이상 이제는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2013. 3. 11. 당시 신청인의 영업표지 및 그 이전에 등록된 상표서비스표 'NAVER'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저명한 표장이고(우리나라의 10대부터 60대까지의 국민 중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 NAVER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청인의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웹사이트 주소인 www.naver.com도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점, NAVER 표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만들어 낸 조어인 점, 피신청인은 NAVER, naver.com의 위와 같은 저명성을 잘 알면서 naver에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식별력 없는 단어 corp를 결합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5개월 가까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 또는 신청인의 포털사이트나 모바일 앱과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후원관계·거래상 제휴관계·추천관계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 또는 그 밖에 분쟁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인 <navercorp.net>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최성준
1인 조정인

결정일: 2013년 8월 5일